1.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규정

제1장 목적 및 기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문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추진하여야 할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수, 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 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체결된 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학술교류협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① 우리 대학교의 국제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 둔다.<2013.03.01 개정>

② 위원회에 관한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술교류협정의 체결 등

제3조(대상기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한다.

1. 학과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학과별 3개정도 선정)을 학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가장 공통적으로 추천된 대학 및 연구기관
2. 우리 대학교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3. 기타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조(체결절차) ① 학과, 연구소, 또는 부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이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대상기관, 교류목적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문서로 작성, 교학처에 제출하여 국제교류위원회에 상정한다.<2013.03.01 개정>

②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해부서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정체결은 당해부서의 장이 교학처와 협의하여 상대기관과 학술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서 성립된다. 단, 사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의 이용 등 기타 방식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다.<2013.03.01 개정>

제5조(협정체결권자) ① 협정체결의 대표로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협정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총장, 교학처장, 연구소장, 부속기관의 장으로 한다.(단, 이행각서 체결의 경우는 교학처장이 한다.)<2013.03.01 개정>

②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부서에서 동시에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주관하에 총장명의로 체결한다.<2013.03.01 개정>

제6조(보고) 협정체결에 따라 시행한 학술교류의 결과는 교학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교학처장은 매 학기말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01 개정>

제7조(서류보관) 학술교류협정문 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교학처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2013.03.01 개정>

제3장 교환교수의 교류

제1절 교류의 원칙

제8조(교류기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교수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환교수의 수) 교환교수의 인원은 호혜원칙에 따른다.

제10조(보수) 교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지급하며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숙소제공)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한다. 단, 이 경우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의 관리비는 교환교수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여비) 왕복 여비는 파견하는 대학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 여비보조를 위한 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우리 대학교 교환교수의 선발 및 관리

제13조(교환교수 파견계획) 국제교류위원회는 매학기 초에 익년도 같은 학기의 교환교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01 개정>

제14조(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교환 대상학교와의 협의에 따라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학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파견 8월 전까지 교학처에 통보하여야 한다.<2013.03.01 개정>

제15조(교환교수 공개모집)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파견 10개월 전에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국제교류위원회가 파견대상교원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의, 추천한다.<2013.03.01 개정>

제3절 교환 이외의 사유에 의한 교수의 해외파견

제16조(교환 이외의 해외파견) 관할청 등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한 경우, 외부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한 경우, 총장의 출장 명령에 의한 경우, 교원이 개인적으로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초청받은 경우 등 교환 이외의 사유로 교원이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교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외국교환교수의 초빙 및 관리

제17조(외국교환교수 초빙계획) ① 외국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교류위원회는 이를 매학기 초에 심의하고 익년도 같은 학기의 외국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01 개정>

②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되어 외국교환교수를 초빙할 경우에 해당부서는 최소한 8월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3.01 개정>

제18조(절차준용) ①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교환교수의

초빙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②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하에 시행되는 교환교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제19조(외국교환교수의 관리) ① 외국교환교수가 우리 대학교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절 공동연구를 위한 원칙

제20조(공동연구) 공동연구의 과제선정,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제4장 학생의 교류

제1절 교류의 원칙

제21조(교류기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교환학생의 수) 교환학생의 인원은 호혜원칙에 따른다.

제23조(등록금의 납부) 교환학생은 파견하는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등록금 이외의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24조(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파견하는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한다.

제25조(숙박편의 제공)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파견학생의 숙박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2절 우리 대학교 교환학생의 선발 및 관리

제26조(대상자 선발 및 통보)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공개모집 방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과장를 경유하여 파견 8월 전까지 교학처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3.01 개정>

제27조(교환학생 공개모집) 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학처에서 파견 10월 전에 교환학생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고 국제교류위원회에서 파견대상자를 심의하여 선발한다.<2013.03.01 개정>

제28조(학점인정) 교환학생이 파견대상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의하여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2013.03.01 개정>

제3절 외국교환학생의 초청 및 관리

제29조(외국교환학생의 관리) 외국교환학생의 관리는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학처에서 담당한다.<2013.03.01 개정>

제4절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와 학점인정

제30조(등록) <2013.03.01 삭제>

제31조(연수기간) <2013.03.01 삭제>

제32조(연수대상교의 선정) <2013.03.01 삭제>

제33조(학점인정) <2013.03.01 삭제>

제5장 기타사항

제3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